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1년 1월 31일
- 회부일자 : 2001년 2월 2일

3. 요구이유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결정에 따라
-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의 모집공고전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골자

○ 위탁대상시설.

- 시 설 명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 시설용량 : 63,000톤/일(폐수 40,000, 오수 23,000)
- 부지면적 : 78,748m²(23,821평)
- 처리방식
 - 수 처 리 : 중력침전, 생물학적영양염류제거, 3차고도처리
 - 슬러지처리 : 원심탈수, 매립 또는 소각
- 기타 부대시설
차집(폐수)관거, 중계펌프장, 방류관로, 기타 관리동외 9종
단. 별도 인계인수서에 의함

○ 위탁대상업무의 내용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
 - 냉·난방시설의 관리업무
 - 시설내·외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 폐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
 -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 약품, 실험실 운영에 필요한 초자기구류·시약류등 관리
 -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처리
 - 폐수배출업체의 폐수처리시설유입처리승인, 배수설비설치승인, 배수설비설치검사, 배수설비사용개시등에 관한 업무
 -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 관리등에 관한 업무
 -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 단, 위·수탁업무 내용 및 처리는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수탁사무의 처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되, 위탁자의 승인을 직인을 사용

○ 명 칭 :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환경사업소

○ 위탁관리기간

- 위·수탁기간은 협약 체결후 인계·인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연장 가능
- 다만, 관리공단등이 설립된 경우 운영관리권 이관
- 수탁기간 연장시 협약기간 만료 3개월전 협약연장여부 서면통보후 협의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

○ 위탁관리비

- 2001년 위탁관리비는 ○○○원으로 한다.

2001년도 예산 370,000,000원(붙임 비목참조) : 계약체결시 변경

- 위탁관리비는 1년단위로 산정하여 계약하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원가계산 누락된 비목은 협약기간내 추가조정 불가, 협약기간 연장, 추가공사, 시설용량변경등 운영여건 변동으로 위탁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협약 변경 가능
- 수선유지비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내구성 공구등의 개·보수비 포함 수탁시설 하자보수기간중에는 하자보수의 한계규명 실비정산
- 인건비 제외한 전력비, 약품투입비, 유지보수비등은 실제 납입금액으로 정산

○ 자산투자비의 부담

- 사무기기, 공구, 차량구입등 모든 비용은 수탁자 부담하되 다음비용은 위탁자 부담
 - 위탁자산의 가치 증진 및 내용연수 증진하는 시설·개·보수공사
 - 기자재 등 유동자산의 확보
 -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 수탁자는 매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등을 제출

○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

기계장치 및 시설물등은 수탁자가 책임지고 보수 및 유지관리

○ 협약이행보증금

위탁관리비의 100분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현금에 갈음하는 이행보증권 납부

○ 재위탁의 금지

수탁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금지

○ 법령 등의 준수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리시설의운영관리관계법령 및 오창과학
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및영에관한조례와 동시행규칙,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위탁업무처리지침 준수

○ 업무의 적정관리

-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24시간 연속 가동,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
- 수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 자격 소자자 배치

○ 수질관리

- 방류수 수질을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환경영향평가협약에 의한 방류
수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
-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 개선대책 강구
-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수탁자의 책임

○ 시설설비등의 사용

- 위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설, 설비, 비품등을 수탁
자에게 무상 제공. 단,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협약이 해제되었
을 때는 해당시설, 설비, 비품 등을 즉시 원상복구 인도
- 무상 제공할 재산의 범위는 위탁자가 별도로 정함
- 위탁자가 무상제공기로 정한 재산 이외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품,
자재, 기구, 차량 등은 수탁자 부담 확보

○ 사고보고

수탁자는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 발생한 경우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름. 수탁재산 변동사항도 같음

○ 조사등

- 위탁자는 위탁업무를 성실 이행여부와 재산관리 실태 등을 매반기
마다 정기적 평가
- 위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수시 조사, 보고 필요한 지시 가능
- 수탁자는 조사등과 관련한 위탁자 요구의 기록 및 보고서 제출

○ 실적보고 및 확인

- 수탁자는 매월 수탁업무 처리성과 보고 및 확인

○ 위탁관리비의 청구 및 지급

- 위탁관리비는 월 단위로 수탁업무처리성과 보고시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리성과 확인후 매익월 15일까지 지급
- 매회계연도 경과후 2월말까지 수탁업무결산서 작성제출
-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 예산안을 편성 위탁자의 승인
- 예산안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매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제출

○ 기밀유지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제3자에게 누설 금지

○ 민·형사상의 책임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 협약의 해제

-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자는 협약해제 가능
 -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 위탁자가제시한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 위의 규정외에 필요한 경우에도 협약 해제 가능.
단, 협약 해제하려는 날로부터 6개월전까지 통지
- 수탁자는 위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협약 해제 가능

○ 손해배상

- 수탁자의 귀책사유시 협약 해제될 때 3개월분의 위탁관리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배상금 지불
- 위탁자의 협약 해제로 수탁자가 손해가 있을 경우 손해 배상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힐때 손해 배상
-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쌍방간 협의 결정
-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 제3자(하류지역주민등)에게 손해를 입힐때 수탁자 부담으로 배상 다만, 손해의 발생이 위탁자의 책임인 경우 위탁자가 부담

○ 기타사항

- 공공의 목적상 가압장등 용수시설등 관련부서 이관전까지 수탁자 부담으로 운영관리
- 수탁자는 신규 또는 결원 보충시 지역의 고용기회 제공
- 수탁자는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 최소화 및 부대시설 개방 등 서비스 개선 노력

○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함

○ 협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협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5. 검토의견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을 검토한바, 이는 오창산업단지내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인근 하천인 미호천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각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결정에 따라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 모집 공고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수탁협의를서안 제6조2항의 ‘위·수탁기간은 협약체결 후 인계인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운영 관리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사료됨.